#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42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임미애·윤준병·문대림

박지원 • 권향엽 • 박해철

임오경 · 최민희 · 황명선

이광희 • 이워택 • 유건영

송옥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육농정책의 하나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 면적의 43.8%를 차지하고,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7%에 달하고 있어 조세감면의 혜택이 실제 경작자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자유전의 원칙 을 실현하는 데에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한편,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으로 친환경 농업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오히 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과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새로운 육농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분산농지로 농기계 이용 비효율성 등 농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농지집적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 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농지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농지 양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 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부터 제69 조의7까지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단서 중 "제69조의4까지"를 "제69조의7까지"로 한다.

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5(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따라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 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69조의6(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이하 이 조에서 "농지집적화"라 한다)하려는 농지의 연접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매입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농지집적화 이외 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농지 매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9조의7(임차농업인에게 매각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매입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농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농지 매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 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제69조의7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
례) 제69조의5부터 제69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
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4
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69조의7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	
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5) ~ (1) (현행과 같음) 69조의5(치화견녹사목

제69조의5(친환경농산물 재배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하였거나 무상사용하게한 농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

<신 설>

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 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 용 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6(농지집적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 무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의 경영구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집단화(이하 이 조에서 "농지집적화"라 한다)하려는 농지의연접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지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매입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농지집적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농지 매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

<신 설>

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의7(임차농업인에게 매각 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 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 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 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매입자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 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u>제69</u> 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 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

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그 농지를 양도하거나 영
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농지
매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
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대중영영으로 정하는 마에 따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u>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하다.

-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 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생략)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 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부터 <u>제69조의4까지</u>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
-
<u>제69조의7까지</u>
2
2.
<u>.</u>
가. (현행과 같음)
나
제69조의7까지

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